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02.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01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02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2002년 2월 21일 제94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2002년 5월 7일 영화진흥법령과 2002년 9월 11일 공연법령의 개정으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시 감경신청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폐지되고 공연장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 : 1종 폐지, 2종 개정
 -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 폐지
 - 공연장업 등록신청 : 징수종목 명칭변경
 -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 징수종목 명칭변경
- 다. 참고사항
 - 공연법 제9조(2002. 1. 26 개정, 2002. 5. 1 시행)
 -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10호 (2002. 9. 11 개정)
 -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지 제17호) (2002. 6. 20 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홍수)

2002년 5월 27일 영화진흥법령 및 규칙과 2002년 9월 11일 공연법령 및 규칙개정으로 한국영화 연간의무 상영일수 감경신청민원의 수수료징수가 폐지되고, 공연법에서 “공연장업”이라는 용어가 “공연장”이라는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영등포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한국영화 연간의무 상영일수 감경신청 민원제출시 징수하던 수수료징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2 나항의 (7)을 삭제하고, 공연법령의 개정으로 종래 “공연장업”이란 용어가 “공연장”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2 가항의 (2), (3)목의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상위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년월일 : 2003. 1.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2002년 5월 7일 영화진흥법령과 2002년 9월 11일 공연법령의 개정으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시 감경신청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폐지되고 공연장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 : 1종 폐지, 2종 개정
 - 한국영화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 폐지
 - 공연장업 등록신청 : 징수종목 명칭변경
 -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 징수종목 명칭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연법 제9조(2002. 1. 26 개정, 2002. 5. 1 시행)
-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2002. 9. 11 개정)
-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10호】(2002. 9. 11 개정)
-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지 제17호】(2002. 6. 20 개정)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 종목(별첨1)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46)”을 “(45)”으로 하고, 가항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2)의 “공연장업 등록신청”을 “공연장 등록신청”으로 하며, (3)의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을 “공연장 변경등록신청”으로 하고, 나항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7)의 “한국영화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1건 2,000원”을 삭제한다.

부 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표】 2. 각종 인 · 허가 신고사항(46종 ⇒ 45종)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 위	수 수 료	종 목	단 위	수 수 료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50,000원 25,000원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50,000원 25,000원
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 (7) 한국영화 연간 의무 상영일수 감경신청	1건	2,000원	<삭 제>	<삭제>	<삭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03. 2.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2월 1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4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3년 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 가. 제안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9조에 의거 2003. 6. 30.까지 결정하여야 하는 법정사업으로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여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 토지 이용의 효율화 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